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8. 8 선고 2024가단595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피 고 A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4. 7. 25.
판 결 선 고 2024. 8. 8.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3. 6. 29. 체결된 매매계약은 20,359,876원을 한도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359,8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중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금 청구의 액수를 '금 180,750,000원을 한도로 하여'의

기재를 부가한 외에는 주문과 같다(사해행위 취소를 명하는 취소 범위와 인용하는 가액배상금이 위 금원을 초과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위 기재는 무익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한도 부가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C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생하였다. 신용보증약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1차보증	2021. 11. 29.	19,000,000	2026. 11. 27.	2021. 11. 29.	일반운전자금대출	20,000,000

2) 아울러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이율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현재 원고가 정한 이율은 위 이행일인 2024. 1. 16.부터 연 8%이다.

3) D은행은 원고의 위 신용보증 아래, 2021. 11. 29. C에게 2,000만 원을 2026. 11. 27.로 변제기를 정하여 대출하였다.

4) C는 대출이자 상환 연체로 인해 2023. 10. 31.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4. 1. 16. D은행에게 C의 대출원리금 19,468,681원(보증원금 19,000,000원 + 이자 468,68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2024. 1. 16. C에게서 대위변제금 중 일부인 217,790원을 회수하여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충당하여,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액수는 19,250,891원이다.

6) 한편, 원고는 위 대위변제 후 원고의 채권보전비용으로 301,032원을 지출하였는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C에게 위 금원 상당의 채권보전비용 청구 채권이 있다. 그리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일 이후 1일간의 손해금을 계산하면 47원(2024. 1. 16. 1일간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돈, 원 미만 버림)이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C는 2023. 6. 29. C 소유의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매매대금 56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3. 6.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C의 자력상태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2024. 1. 16. 기준으로 대위변제금 및 채권보전비용, 손해금 합계 19,551,970원의 채권이 발생하여 있다.

아울러,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19,250,89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4.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배상 이율인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 금전대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C는 2023. 7. 14.부터 연체정보 등록, 2023. 7. 20. 폐업신고 및 2023. 8. 30.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D은행의 변제 요청으로 인하여 2014. 1. 16.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C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2주 만에 대출이자 상환 연체가 신용정보로 등록되고 곧이어 원고가 D은행으로부터 상환 요청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과 법리를 종합할 때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

C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인 책임재산 부족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의무

가. 갑 제7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그 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2건이 말소된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새롭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으로 이 사건 소유권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과 비교하여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상태를 초래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되 다만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취소된 범위와 동일한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에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합한 액수가 된다.

나. 피보전채권의 액수를 보면, 19,551,970원 및 그 중 금 19,250,891원에 대하여 2024. 1. 16.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24. 7. 25.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돈 807,906원(= $19,250,891\text{원} \times 192/366 \times 0.08$, 원 미만 절삭)이 되는바, 이를 계산하면 20,359,876원(= $19,551,970\text{원} + 807,906\text{원}$)이다.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인 560,000,000원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매매대금을 상회할 것으로 추인되기는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450,000,000원을 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위 4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120,000,000원이 피보전채권액을 넘지 않는 것은 계산상 분명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359,87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20,359,8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박근정

별지